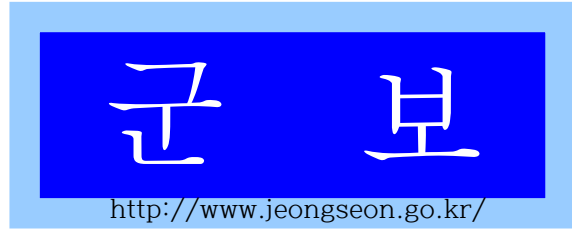




정 선 군

군보는 공문서로의 효력을 갖는다.



제574호 2021. 8. 18. (수)

【고 시】

- 정선군 고시 제2021-106호 정선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고시.....1

【공 고】

- 정선군 공고 제2021-986호 정선(신동) 군계획시설(하수도) 공사 완료 공고.....3
- 정선군 공고 제2021-1022호 정선(북평) 군계획시설(중로2-1호선) 공사 완료 공고...4
- 정선군 공고 제2021-1023호 정선(사북) 군계획시설(광장) 공사 완료 공고.....5
- 정선군 공고 제2021-1024호 정선(정선) 군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 공사 완료 공고.6
- 정선군 공고 제2021-1034호 정선(정선) 군계획시설(공공청사) 공사 완료 공고.....7

○ 정선군 공고 제2021-1047호 정선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운용 조례 폐지안
입법예고.....8

□ 발행 : 정선군청 기획관 (전화:560-2213, FAX:560-2592)

고 시

정선군 고시 제2021-106호

정선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고시

「산림보호법」 제45조의8제5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의3제4항 규정에 따라 산사태취약 지역을 아래와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

2021년 8월 11일

정 선 군 수

1. 고 시 명 : 정선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고시
2. 지정고시
 - 가. 지정사유 :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 나. 지정내역 : 17개소 (정선군 북평면 숙암리 산147-4 외 16개소)
3. 고 시 일 : 2021. 8. 11.
4. 행위제한(산림보호법 제45조의10)
 - 가. 사방댐 등 「사방사업법」 제2조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 나. 사방댐 등 「사방사업법」 제2조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거부 또는 방해하는 행위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선군 산림과(☎033-560-242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사태취약지역에서 행위제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산림보호법」 발췌

제45조의10(산사태취약지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 누구든지 제45조의8제5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산사태취약지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산사태의 예방을 위한 사방댐 등 「사방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 2. 산사태의 예방을 위한 사방댐 등 「사방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거부 또는 방해하는 행위

제45조의11(산사태취약지역의 관리)

- ①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산사태취약지역의 산사태예방을 위하여 「사방사업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사방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하여야 하며,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현지점검을 실시하고 응급조치 및 보수·보강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현지점검 실시 결과 산사태 발생의 우려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의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관련 시설·토지 등의 사용을 제한·금지하거나 보수·보강 또는 제거 등 안전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안전조치 명령을 받은 토지의 소유자 및 관계인은 안전조치를 이행하고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관할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④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제2항의 안전조치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신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한다.

제54조의2(벌칙)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4. 제45조의10을 위반하여 산사태취약지역에서 사방시설을 훼손하거나 사방시설을 설치·관리하는 것을 거부 또는 방해한 자

공 고

정선군 공고 제2021-986호

정선(신동) 군계획시설(하수도) 공사 완료 공고

「건축법」 제11조(의제 협의)에 따라 변경 인가한 정선(신동) 군계획시설(하수도) 증설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사 완료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6일

정 선 군 수

1. 위 치: 정선군 신동읍 예미리 826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군계획시설(하수도) 사업

나. 명 칭: 신동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3. 사업의 면적 (금회시행)

(단위: m²)

구 분	합계	설비동	호퍼동	건조장	비고
공공하수처리시설	689.72	441.00	60.72	188.00	3개동 증설

4. 사업시행자 및 주소

가. 성 명: 정선군수(상하수도사업소)

나. 주 소: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정선로 1047)

5. 사업기간

가. 착수일: 실시계획인가일

나. 준공일: 2021. 7. 08

정선군 공고 제2021-1022호

정선(북평) 군계획시설(중로2-1호선) 공사 완료 공고

정선군 고시 제2020-25호(2020. 2. 07)로 실시계획인가 고시된 정선(북평) 군계획시설(중로2-1호선)에 대하여 개설공사 완료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사 완료 공고 합니다.

2021년 8월 13일

정 선 군 수

1. 위 치 : 정선군 북평면 북평리 204-9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가. 종 류 : 정선(북평) 군계획시설(중로2-1호선) 사업
 - 나. 명 칭 : 정선(북평) 군계획시설[(중로2-1호선(면사무소 뒤)) 개설공사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금회시행)
 - 가. 규 모 : L=351.3m B=15.0m
4. 사업시행자 및 주소
 - 가. 성 명 : 정선군수(도시과)
 - 나. 주 소 :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5. 사업기간
 - 가. 착수일 : 실시계획인가일
 - 나. 준공일 : 2021. 7. 09

정선군 공고 제2021-1023호

정선(사북) 군계획시설(광장) 공사 완료 공고

정선군 고시 제2020-197호(2020. 8. 14)로 실시계획인가 고시된 정선(사북) 군계획시설(광장)의 조성사업 완료됨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사 완료 공고 합니다.

2021년 8월 13일

정 선 군 수

1. 위 치 :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366-186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정선(사북) 군계획시설(광장)

나. 명 칭 : 정선(사북) 군계획시설(광장) 조성사업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금회시행)

(단위: m²)

시설명	군계획결정		실시계획인가	비 고
	세부시설명	면적(m ²)	금회시행	
광장	경관광장	781	▪ 경관광장 781m ²	

4. 사업시행자 및 주소

가. 성 명 : 정선군수(전략산업과)

나. 주 소 :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5. 사업기간

가. 착수일 : 실시계획인가일

나. 준공일 : 2021. 5. 28

정선군 공고 제2021-1024호

정선(정선) 군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 공사 완료 공고

「건축법」 제11조(의제 협의)에 따라 변경 인가[정선군 고시 제2021-57호(2021. 4. 23)]된 정선(정선) 군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의 증축사업 완료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사 완료 공고 합니다.

2021년 8월 13일

정 선 군 수

- 1. 위 치 : 정선군 정선읍 북실리 618-13번지 일원
-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가. 종 류 : 정선(정선) 군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 사업
 - 나. 명 칭 : 정선(정선) 군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 증축 사업
-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금회시행)

(단위: m²)

시설명	군계획결정		실시계획 변경인가	비고
	세부시설명	면적(m ²)		
교통 시설	자동차 정류장	4,824	<input type="checkbox"/> 자동차정류장 A=4,824m ² (구역면적) <input type="checkbox"/> 증축내용(A=335.45m ²) ▪정비실 A=166.50m ² ▪자동차장 A=117.90m ² ▪차 고 A=51.05m ²	

- 4. 사업시행자 및 주소
 - 가. 성 명 : 정선군수(안전과)
 - 나. 주 소 :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 5. 사업기간
 - 가. 착수일 : 실시계획인가일
 - 나. 준공일 : 2021. 7. 09

정선군 공고 제2021-1034호

정선(정선) 군계획시설(공공청사) 공사 완료 공고

「건축법」 제11조(의제 협의)에 따라 변경 인가[정선군 고시 제2021-66호(2021. 5. 07)]된 정선(정선) 군계획시설(공공청사_보건소)의 증축사업(선별진료소) 완료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사 완료 공고 합니다.

2021년 8월 13일

정 선 군 수

1. 위 치 :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 80-5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가. 종 류 : 정선(정선) 군계획시설(공공청사) 사업
 - 나. 명 칭 : 정선(정선) 군계획시설(공공청사_보건소) 증축사업(선별진료소)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금회시행)

(단위: m²)

시설명	군계획결정		실시계획 변경인가(m ²)	비고
	세부시설명	면적(m ²)		
공공문화 체육시설	공공청사	8,149	<input type="checkbox"/> 공공청사 A=8,149m ² (구역면적) <input type="checkbox"/> 증축내용 ▪선별진료소 A=100.16m ²	

4. 사업시행자 및 주소
 - 가. 성 명 : 정선군수(보건소)
 - 나. 주 소 :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녹송로 33
5. 사업기간
 - 가. 착수일 : 실시계획인가일
 - 나. 준공일 : 2021. 7. 27

정선군 공고 제2021-1047호

정선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운용 조례 폐지안 입법예고

「정선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운용 조례」 폐지안에 대하여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1년 8월 18일

정 선 군 수

1. 폐지이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부칙 제16조에 의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실효(2020. 7. 1.) 이후 장기미집행시설 대지 매수 청구 급감.
- 당초 설치 목적은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보상 재원의 안정적, 계획적 조달이나 현재 정선군 장기미집행 특별회계 세입 재원이 이자수입을 제외하면 모두 일반회계 전입금으로만 충당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본 특별회계 운용의 실효성이 떨어짐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고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환하여 예산을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정선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운용 조례 폐지”

3. 폐지조례안 : “별첨”

4.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사항 없음”

5. 입법예고 : 2021. 8. 18. ~ 2021. 9. 8. (21일)

6. 의견제출

가. 제출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나. 제출기일 : 2021년 9월 8일까지

다. 제출기관 및 문의처 : 정선군청 시설국 도시과

- 연락처 : 전화(033-560-2475), 팩스(033-560-2596)

- 주 소 : (23161)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정선군청 시설국 도시과

라. 제출방법 : 우편, 팩스, 직접방문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정선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개정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견	비고
	찬성	반대		

정선군 조례 제 호

정선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정선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운용 조례는 폐지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본 특별회계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정선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의 이월액 및 이자수입은 정선군 일반회계에 세입조치한다.

제3조(재산 등의 승계 및 지원) ① 이 조례의 시행으로 폐지되는 「정선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운용 조례」의 채권·채무 등 모든 권리·의무는 정선군 일반회계가 이를 승계한다.

② 정선군 장기미집행시설 군계획시설 특별회계의 폐지 전에 확정된 사업은 일반회계에서 계속 지원할 수 있다.

관계법령 발췌

□ 지방재정법

제9조(회계의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이나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서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목적세에 따른 세입·세출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28.>

③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4. 5. 28.>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제33조 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4. 5. 28.>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도시·군계획시설 부지의 매수 청구) ①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이하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이라 한다)의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그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나 그에 상당하는 절차가 진행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그 도시·군계획시설의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 중 지목(地目)이 대(垔)인 토지(그 토지에 있는 건축물 및 정착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자(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매수의무자"라 한다)에게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제48조(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 등) ①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은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을 잃는다.

②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이 효력을 잃으

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군계획시설(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고시한 도시·군계획시설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직접 설치하기로 한 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또는 그 고시일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현황과 제85조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지방의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권고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권고받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거나 도지사에게 그 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여야 한다.

부 칙 <제6655호>

제16조 (도시계획시설결정의 매수청구 및 실효기산일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결정·고시된 도시계획시설로서 부칙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로 보는 시설의 결정의 실효에 관한 결정·고시일의 기산일은 제4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2000년 7월 1일 이전에 결정·고시된 도시계획시설의 기산일은 2000년 7월 1일
2. 2000년 7월 2일 이후에 결정·고시된 도시계획시설의 기산일은 당해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고시일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설치되거나 그 입지에 관한 고시가 된 공공시설 또는 공용건축물로서 부칙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로 보는 시설에 대한 시설부지의 매수청구 및 결정의 실효에 관한 결정·고시일의 기산일은 제47조 및 제4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로 한다.

현 행 조 례

□ 정선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운용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른 10년 이상 미집행 군계획시설 중 대지보상 재원의 안정적·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관리) ① 제1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26조에 의한 정선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운용한다.

② 특별회계는 대지매수 자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도시개발담당부서에서 총괄 관리한다.

제3조 삭제<2017.11.27.>

제4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회계 또는 군계획관련 특별회계의 전입금
2.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20퍼센트 이내 해당액
3. 국·도비 보조금 및 용자금
4. 차입금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 제2항에 따른 군계획시설 채권의 발행
5. 당해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및 기타 수입금

제5조(세출)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출한다.

1. 법 제47조에 따른 대지 매수 보상금(지장물 및 철거보상금 포함) 및 부대경비
2. 제4조제4호에 따른 차입금 또는 군계획시설 채권의 상환
3. 그 밖에 특별회계의 운용·관리를 위한 경비

제6조(대지보상금 보상원칙) ① 법 제47조 제1항에 의하여 매수청구를 받은 토지를 매수할 때에는 현금 또는 채권으로 지급한다. 다만, 채권 지급대상은 법 제47조 제2항을 따르고 채권의 구체적인 상환기간과 이율은 「정선군 군계획 조례」 제12조를 준용한다.

② 매수 결정한 토지는 법 제47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7조(준용) 특별회계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 외에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존속기한) 이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본조신설 2018.12.14.]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